

행정안전부 제 호

특례를 둘 수 있는 시·군·구 지정서

□ 지정 내용: 특례를 둘 수 있는 시·군·구 지정

시·군·구	특례명(기능명)	근거 법령

「지방자치법」 제19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례를 둘 수 있는 시·군·구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행정안전부장관

직인